

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11일

광진구청장



1. 융자규모 : 일십억원(W1,000,000,000원)

2. 융자대상 : 광진구 내 사업장(본점)을 둔 중·소기업, 소상공인*

-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) 필요

※ 제외대상

- ①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
- ② 금융·보험업, 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(붙임1 참고)
- ③ 휴·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자 등

3. 융자조건

-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- 융자한도 : 법인사업자 3천만원 ~ 2억원, 개인사업자 3천만원 ~ 1억원
- 융자금리 : 연 1.8% 고정금리
- 상환방법 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※원금상환 : 연 2회 (2, 8월) / 이자상환 : 연 4회 (2, 5, 8, 11월)

4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9. 23.(월) ~ 9. 26.(목)
- 신청절차



*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또는 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원칙

- 방문장소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

○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
공 통	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-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(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)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: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(말소사항포함, 법인에 한함)
추 가	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(기술자격증,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) ※ 해당 업체에 한함

※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

5. 유의사항

-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
-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
- 휴·폐업,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
-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
6. 문의처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(☎ 02-450-7386)

붙임 지원 제외업종 내역 1부. 끝.